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664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6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18 선고 2002나1312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AA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굿모닝AA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A 담당변호사 김B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CA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18. 선고 2002나13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한EA을 피보험자로 한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7. 7.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피보증인: 원고의 DA지점 대리인 근무하던 한EA, 보험기간: 1997. 7. 31.부터 1998. 9. 28., 보험가입금액: 6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KKKK증권(증권번호: 1XXXX-XX-XXXXX 842)을 교부받았고, 또한 원고는 1997. 9.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피보증인: 위 한EA를 포함한 243명의 원고 직원, 보험기간: 1997. 9. 29.부터 1998. 9. 28., 보험가입금액: 7,890,000,000원(그 중 한EA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3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KKKK증권(증권번호: 1XXXX-XX-XXXXX357)을 교부받았는데, 한EA는 1994. 9. 30. 고객인 유EB의 주식거래계좌를 관리하다가 1994. 10. 4.부터 1997. 10. 15.까지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다음부터 과당매매라 한다)를 하여 유EB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에 유EB는 한EA와 그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유EB에게 4,5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그 결정은 1999. 10. 18. 확정되었는데, 이에 원고는 1999. 10. 29. 위 결정금액을 유EB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한EA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한 4,570만 원에 대하여 1999. 12. 21. 보험한도금 9천만 원(6천만 원 + 3천만 원) 내인 위의 4,57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한EA의 과당매매행위가 그를 피보험자로 한 각 보험계약상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한EA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유EB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45,700,000원 중 한EA의 신원보증인으로부터 변상받은 22,8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8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당매매행위는 약 3년 남짓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반면, 그 중 위의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1개월 반 남짓, 또는 17일에 불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의 손해가 위의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진 과당매매행위에 의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의 보험기간 중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기록중의 증거들에 따르니, 제1심 및 원심 제1차 변론기일까지의 원고와 피고의 주된 쟁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가 한EA를 피보증인으로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것이었고, 제1심의 판단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각 배임행위일로부터 진행하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의 건에 대한 피고의 답변내용 역시 한EA와 관련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험기간 내의 보험사고가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였던 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기간이 1995. 9. 29.부터 1998. 9. 28.까지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가 원심 2차 변론기일에서야 비로소 한EA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1994. 10. 4.부터 1997. 10. 15.까지의 기간 중 1994. 10. 4.부터 1997. 7. 30.까지 보험사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기간의 범위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EC의 보험사고에 관한 청구에서 조EC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형만 임의매매형식에 의한 것인지 과당매매형식에 의한 것인지만 다를 뿐 조EC과 한EA 모두 주식거래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들이었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조EC을 피보증인으로 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기간이 1996. 9. 29.부터 1997. 9. 28.까지로 한EA를 피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인 1997. 9. 29.부터 1998. 9. 28.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995. 9. 29.부터 1998. 9. 28.까지라면 한EA이 1994. 10. 4.부터 1997. 10. 15.까지 사이에 행한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 54,559,052원의 상당부분이 그 보험기간에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니, 원고는 한EA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사고의 종기인 1997. 10. 15.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기간내에 있음을 입증하는 보험계약서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와 사이에 한EA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었기 때문에 피고가 보험기간내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역시 보험기간내의 보험사고인 점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않다가 항소심에 와서 비로소 준비서면을 통하여 단 한번 다투었던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보험사고와 보험기간 사이의 관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주로 다툼이 되었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거만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1986. 11. 25. 선고 86므67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도 마땅히 원고가 간과한 원고의 보험금청구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과 보험사고의 관계에 관하여 지적한 후, 원고에게 조EC을 피보증인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에 한EA을 피보증인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는 한EA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보험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해 보았어야 옳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입증을 촉구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간과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한EA의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한EA을 피보증인으로 한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